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실태와 문제점 고찰



과목명: 사회보장론
담당교수: 이상록 교수님
제출일: 2026.06.18.

4조

학과	학번	이름
사회복지학과	202516310	권지영
사회복지학과	202516685	서나영
사회복지학과	202315030	설지연
사회복지학과	202522795	이서윤

목차

I. 제도의 연혁	1
1. 제도의 의의	1
2. 제정 배경	1
3. 제도의 주요 변화	2
II. 제도의 주요 내용	3
1. 제도의 기본 내용	3
2. 급여별 주요 내용	4
III. 제도의 역할/기능 및 성과	5
1. 수급자 현황	5
2. 주요 역할 및 기능	6
IV. 제도의 문제점 및 이슈, 쟁점, 개선 과제	7
V. 기관 현장탐방	10
1. 기관 소개	10
2. 기관 방문 사진	10
3. 기관 현장탐방에 대한 소감 및 평가	11
참고문헌	

1. 제도의 연혁

1. 제도의 의의

과거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은 자선이나 박애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6세기 유럽을 시작으로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이다. 오늘날 공공부조의 모태로 평가받는 이 법은 비록 시혜적 성격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빈곤을 개인만의 책임으로 보는 시선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와 같은 빈곤층의 어려움, 대공황 등을 겪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은 점차 사회보장제도를 넓혀나갔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되어 오랜 기간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며,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했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당당히 누려야 할 ‘사회권’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한국문화대백과사전, 2026).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제정 배경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대한민국 공공부조의 시초였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시혜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온 국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국가 안전망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998년 3월 4일 『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 저소득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입법청원을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마침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한국문화대백과사전, 2026). 본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며 공공부조제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3. 제도의 주요 변화

2000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 수급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편을 해왔다. 우선 2003년 1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광범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자에서 빠진 사각지대가 많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2005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였다. 제도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는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란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전체를 지원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전부 지원하지 않는 구조였다. 이러한 흐름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여 및 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지만, 이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완전한 폐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존재한다(이혜인 외, 2020).

〈표 8-1-9〉 급여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급여	기준변화
생계급여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소득 하위 70%) (20년 1월) 중증장애인 가구 (21년) 노인, 한부모 (22년) 전가구
의료급여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된 가구(소득 하위 70%) (20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이 포함된 가구(소득 하위 70%)
주거급여	(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육급여	(15년 7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 제12조의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II. 제도의 주요 내용

1. 제도의 기본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수급자가 자기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급여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별로 정한다.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총 7가지로 분류되어 지급되고 있다(법제처, 2026).

2. 급여별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생계급여액 산정은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인 ‘보충급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그 부족한 부분만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제처, 2026).

2026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306,943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351,791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9쪽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다(법제처, 2026).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3,351,791원=3,044,848원(7인가구)+306,943원(7인가구 - 6인가구)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쪽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급여이다.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이다. 본 급여는 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수술, 재활, 입원 등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발생한 비용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법제처, 2026).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급식비,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진로 관련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다(법제처, 2026).

5) 그 외(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는 의료, 주거,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영아 1명당 7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추가 출생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장제급여 또한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활급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법제처, 2026).

III. 제도의 역할/기능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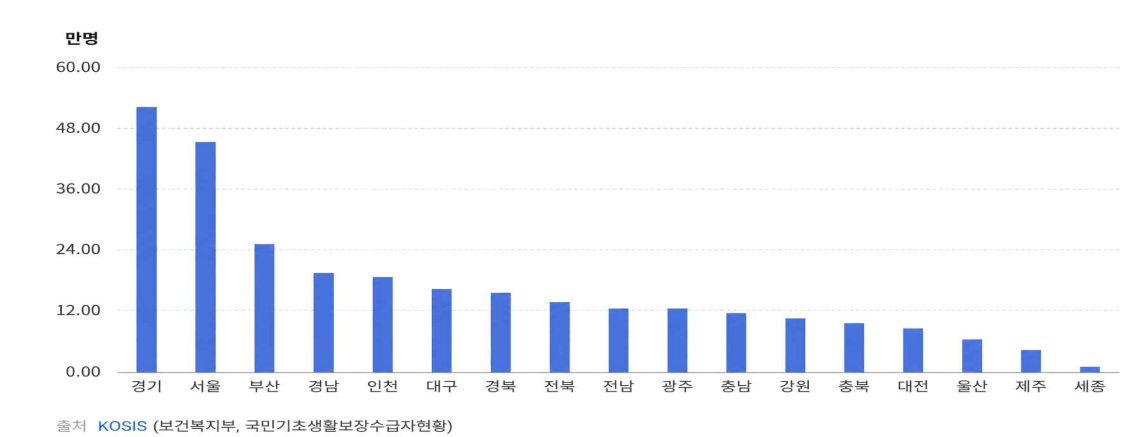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수급자 수는 2,673,485명에 도달하였다.

1. 수급자 현황

<연도별 현황>



<시·도별 현황>



2. 주요 역할 및 기능

1)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탈수급 촉진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자활 조성’을 한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인재 외, 2022). 현재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은 카페 운영, 세탁 사업, 돌봄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

부는 맞춤형 자활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올해 4월 한 달간 시행했다(성서호, 2026).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의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립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수급자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첫째, 정서·인지적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오랫동안 빈곤으로 위축되어 있던 수급자들에게 ‘자신감 회복’, ‘근로 의지에 대한 극복’이라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이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생계를 안정시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진로 방향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조일원 외, 2023).

2) 빈곤 완화(소득재분배) 효과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누진세를 기초로 한 일반 조세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는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자원이 직접 이동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즉, 제한된 예산을 빈곤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의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이인재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은 “기준선 상향 조정은 수급권자의 최저보장 수준이 상향되는 점에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뉴스핌, 2024).

3) 최저 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격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빈곤에 처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생계를 유지해 주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한 언론에 보도된 20대 청년 수급자 사례는 본질적으로 본 제도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모의 사업 부도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이 청년임대주택에서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본 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신지원, 2022).

IV. 제도의 문제점 및 이슈, 쟁점, 개선 과제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4인 가구의 경우,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로 인상되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역시 239만 2,013원에서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7.2%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26).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가, 대상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음에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나 실질 생계비를 고려하면 현재 급여 수준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반영하여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개선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2. 복지 신청주의 문제

현 우리나라 국내 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에 가로막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현실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시행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잔디, 2025).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복지급여 프로세스는 초기 상담, 신청, 통합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친다. 대다수의 초기 접수를 도맡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복지사업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나 능동적인 사각지대 발굴 같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복지멤버십 제도의 전폭적인 확대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급여를 통합 신청하거나, 자동 신청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김기태 외, 2025).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신청주의 완화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개선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개별 대응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 지원 협의체’를 처음 만들었다. 해당 협

의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등 1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선제적 복지 체계인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5).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내용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3.).

이러한 협의체 구성 외에도, 정부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또한 간소화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업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서 신속히 포착하도록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가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영신, 2025).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듯, 신청주의 방식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각지대 문제를 일으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인프라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3.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부양비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2025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지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책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보건복지부, 2025).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쟁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속 요구되어왔다. 그 결과 교육·주거·생계급여 등 대부분의 급여 유형에서는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취약 계층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가족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가 받는 것으로 산정하던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현장과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이번에 폐지한 것은 간주 부양비일 뿐, 수급권 획득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정진원, 2025). 이러한 논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주 부양비 폐지와 같은 대책을 넘어, 생계·주거·교육 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온전한 폐지가 어렵다면, 신청자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실질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기관 현장 탐방

1) 기관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청과 금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기관 방문 사진



<전주시청>

<금암동 주민센터>

3) 기관 현장 탐방에 대한 소감 및 평가

권지영

이번 기관 탐방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마음가짐이었다. 특히 금암동 주민센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마음가짐 중 하나는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고비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와 스스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돕는 직업인 만큼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전주시청에서 들었던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도 매우 인상 깊었다. 아무리 제도가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 전주시청에서는 '함께라면'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나영

이번 인터뷰를 통해 주민센터와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실제 업무와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상담과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수급자 관리뿐 아니라 민원 대응, 사례 관리, 연계, 복지시설 관리,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복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복지제도의 확대와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과 행정 체계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한 동에서 1,000세대가 넘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현실은 사례 관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주요 이슈로 복지 사각지대의 부정수급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의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가진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의료급여 기준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설지연

이번 기관탐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장 과제와 실무자들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였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일평균 2~3명 이상의 민원인이 꾸준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도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으로는 이를 모두 밀착 관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가구 발굴 조사와 사례 관리는 접수 및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질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공백은 고립·은둔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했다. 복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다. 이는 실제로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라고도 하셨다. 또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실무자의 말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보더라도, 제도 자체는 계속해서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며 더 많은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이 그동안 너무 이론 중심적이었던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서윤 (기관 탐방 일정 미참여에 따른 대체 과제 제출)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5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이혜인, 김서영. “정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완화 예고”. 경향신문. 2020.07.31.

<https://www.khan.co.kr/article/202007312128005>

법제처. 『기초생활보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6.01.01.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KOSIS. 국가 통계 포털. 2026.06.0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DT_11714_N001%26orgId%3D117%26checkFlag%3DN%26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22). 사회보장론 개정 4판. 나남.

성서호. “복지부, 4월 한달 맞춤형 자활지원 개편 예비 시범사업”. 연합뉴스. 2026.04.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1087500530?input=1195m>

조일원, 강혜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2023): 279-321.

뉴스핌. “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35% 상향...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강화해야”.

2024.05.1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14000175>

신지원. “저는 20대 기초수급자입니다...2030 수급자 약 2배 증가”. KBS뉴스. 2022.10.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89777&ref=A>

보건복지부. (2026.01.01.).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7&tag=&nPage=1

김잔디. “송파세모녀 11년 잔인한 비극 되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착수”. 연합뉴스.

2025.08.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4114900530?input=1195m>

김기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20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 전매트' 구축한다". 2025.12.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325

김영신. "시로 위기가구 찾아 지원...'복지 신청주의' 본격 개선". 연합뉴스. 2025.1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036700530?input=1195m>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24.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7069>

정진원. "대구 시민단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노컷뉴스. 2025.12.11.

https://www.nocutnews.co.kr/news/644180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211033953